

미국 Viacom v. Youtube 저작권 소송 판결*

■ 김 욱 준**

1. 개요

2010년 6월 23일 미국 뉴욕 주 남부지방법원은 Viacom과 Youtube 간 제1심 온라인저작권 소송에서 Youtube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Viacom이 2007년 Youtube를 상대로 낸 저작권 배상소송이 일단락 지어졌다. Youtube 승소판결은 최근 미국의 저작권 소송에서 잇따른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패소 가운데 내려진 것으로, 온라인콘텐츠의 배급 및 소비 방식에 관한 물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고는 Viacom v. Youtube 소송의 배경과 판결 논거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2. 배경

Youtube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San Bruno에 본부를 두고 2005년 2월 온라인상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분석실 이승혜, 정승원, 이호현 연구원이 본 원고의 작성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임연구원, (02)570-4139, wkim@kisdi.re.kr

서 동영상물을 공유하는 웹사이트로 출발하여, American Online, Yahoo, MSN 인터넷사업 부문을 능가하면서 제1의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성장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2006년 11월 Google은 16.5억 달러에 Youtube를 인수했으며 현재 Youtube는 Google의 자회사이다.

한편, Viacom는 1971년 ‘CBS Films’라는 CBS의 TV 신디케이션 부문으로 출발하여 거대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하였는데, 2010년 5월 3일 기준으로 Walt Disney, News Corp., Time Warner에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로 규모가 큰 미디어 그룹이다.¹⁾ Viacom은 MTV, VHI, CMT, Nickelodeon, Comedy Central, TV Land, Paramount Pictures 등 전 세계적으로 170여 개의 채널과 430여 개의 미디어 제작 관련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다.

Viacom이 Youtube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Viacom은 ‘The Daily Show’ 및 MTV의 인기프로그램 등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Youtube와 맺고자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Viacom은 Youtube 사이트에서 Viacom 소유의 프로그램이 무단으로 게재되면서,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Youtube를 상대로 10억 달러의 배상소송을 냈다.²⁾

Viacom은 자회사를 중심으로 원고인단을 구성했으며,³⁾ 원고 측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Youtube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첫째, Youtube가 Viacom 영상물을 Viacom의 승인 없이 온라인에 유포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침해이며, Youtube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Youtube가 해당 저작권침해 영상물을 관람하는 이용자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광고수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⁴⁾ 미국의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의하면 본인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1) <http://money.cnn.com> Fortune 500.

2) Viacom v. Youtube(2007). Viacom은 160,000개의 동영상물이 15억 정도의 시청 횟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으며 배상금의 규모도 이에 근거한 산술적 수치이다.

3) 원고는 Viacom International Inc., Comedy Partners, Country Music Television Inc.,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 및 Black Entertainment Television Inc. 으로 구성되었다.

4) Viacom v. Youtube(2007).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는 경우와 금전적인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⁵⁾

그러나 Youtube는 DMCA가 정하는 면책 가이드라인에 맞는 조치를 해왔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했다.⁶⁾ 뉴욕 주 남부지방법원은 Viacom의 주장대로 Youtube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금전적인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했는지를 판단하고, Youtube가 DMCA 면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제1심 판결의 핵심으로 보았다.

3. 판결논거

-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침해 사실의 인지 여부: Youtube가 저작권침해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Youtube가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의 해석이 내려졌다. 즉 Youtube 자신이 저작권침해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시점은 Viacom이 Youtube에게 저작권침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통보한 이후이다.⁷⁾
- 저작권자의 모니터링 및 통보 의무: 법원은 Viacom이 먼저 나서서 침해사실에

5) 미국의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면책조항은 17 U. S. C. § 512(c)에 기술되어 있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도 면책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첫째, 침해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혹은 인지하고 있더라도 즉각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을 삭제한 경우이다. 둘째, 저작권 침해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윤을 획득하지 않은 경우이다.

6) 17 U. S. C. § 512(c). 온라인서비스사업자 혹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저작권자의 삭제요구를 즉시 이행하였을 경우, 위법에 대한 책임성을 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7) 저작권침해행위를 사업자가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적색깃발(red flag) 테스트’라고 한다. 법원이 인정하는 시점은 저자권자 혹은 저자권자의 대리인이 해당 사업자에게 저작권 보호대상인 저작물, 복제물, 제소국 연락 정보를 해당 사업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자의 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한 저작권침해행위를 알리는 것으로는 사업자가 침해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그 내용을 Youtube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⁸⁾

-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즉각적인 삭제 여부: Viacom이 2007년 2월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Youtube는 지적된 모든 저작권침해 영상물을 즉시 삭제했다. Viacom이 Youtube에게 삭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시점은 2007년 2월 2일이며, Youtube는 이튿날 거의 모든 불법복제물의 삭제를 이행했다고 법원은 밝히고 있다.
-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이윤획득 목적의 여부: 법원은 Youtube가 이윤을 목적으로 Viacom의 저작물들을 무단게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액 요금을 부과하고, 이용자는 일정기간에 동안 온라인서비스를 사용한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요금부과는 저작권법에 적법한 이용행위에 대해서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혹시 이용기간에 저작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것이 요금부과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Youtube의 경우, 인터넷광고 수익이 이용자의 적법한 이용행위에 대한 결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불법을 전제로 획득하려고 했던 ‘금전적인 이윤’이 아니라고 법원은 해석했다.

4. 시사점

Viacom v. Youtube 저작권 소송의 판결에 대한 시사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는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관해서 감시의무가 없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

8) Perfect 10 v. CCBill, 488 F.3d 1102(2007). 본 판례에서도 저작권자에게 모니터 의무를 부과하였다. DMCA에 의하면 저작권자가 직접 나서서 침해사실을 감찰(police)하고 복제물을 발견하며 증거들을 문서로 만드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법원은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공정이용(fair use)의 대상인지를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점은 저작권자가 침해사실을 수집하고 정부 기관을 통해서 사업자에게 통보한 이후이며, 저작권자가 구체적인 정보의 수집과 통보에 관한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대규모의 불법복제물이 발생할 경우 모니터 비용이 비싸지며, 결과적으로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DMCA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유선과 무선네트워크 모두에서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가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이용환경을 고려해 볼 때, Viacom v. Youtube 판결은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균형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 책임 수위에 대해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의 입장은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침해 사례들을 일괄적인 방식에 의해서 처리할 수 없으며, 현행법을 그대로 두면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면책사례를 개별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다.⁹⁾ 예를 들어, 삭제이행에 관해서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곧바로’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여기에 일괄적인 시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금전적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불법행위가 전체 온라인서비스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할 때에도 면책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해당 메시지의 크기(bytes) 혹은 접속시간에 대한 기준으로는 불법행위 여부를 일괄적으로 판가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온라인 저작권 분쟁소송 역사에서 뉴욕 주 남부지방법원의 Viacom v. Youtube 판결은 위와 같은 시사점을 남기는 판례로서, 최근 Grokster, Fung 및 Lime Group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이 DMCA 면책을 얻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¹⁰⁾ 특히 지난 2005년 ‘간접적인(secondary)’ 저작권 침해를 ‘유발(inducement)’ 시킨다는 혐의로 DMCA 면책에서 제외되었던 Grokster 판례 이후

9) Viacom v. Youtube(2010).

10)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MGM) v. Grokster(2005); Columbia Pictures Industries Inc. v. Fung(2009); Arista Records LLC v. Lime Group(2010).

다소 반전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1심에서 패소한 Viacom이 연방항소 법원 혹은 대법원을 통해서 항소할 것이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향후 법적인 논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Fortune 500 (2010. 7. 12). <http://money.cnn.com/>

Viacom v. Youtube, --- F.2d ---, 2010 WL 2532404 (S.D.N.Y).

Perfect 10 v. CCBill, 488 F.3d 1102(2007).

Viacom v. Youtube, 540 F.2d 461(2007).

17 U. S. C. § 512.